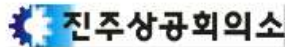


www.work.go.kr/youthjob

With 진주상공회의소

2023년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



신청방법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

어떻게 신청하나요?

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
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

참여신청

(운영기관: 진주상공회의소)



누리집 홈페이지 바로가기
(www.work.go.kr/youthjob)

T. 055-753-0412 F. 055-758-8220

사업절차

- 01 「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누리집」 홈페이지 (www.work.go.kr/youthjob)에서 기업이 참여신청
- 02 기업참여 승인 후 채용계획에 따라 정규직 채용 및 채용자 명단통보 (채용일 1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통보)
- 03 참여청년의 채용일로부터 6개월 고용유지 후 1회차 지원금 신청
- 04 각 회차별 안내에 따라 2회차/3회차지원금 신청 (남은 6개월을 3개월 단위로 신청)
- 05 진주상공회의소는 사전심사결과를 진주고용센터에 제출 및 지급의뢰
- 06 진주고용센터는 최종심사 후 기업에 지원금 지급

사업개요

가입요건
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?

[기업요건을 갖춘] 기업이

[청년요건을 갖춘] 청년을

[채용요건에 따라] 정규직으로 채용 할 경우

2년간 **최대 1,200만원**의 지원금을
기업에 지원하는 사업

채용 청년 1인당

-월 60만원 씩 12개월간 지급(최대 720만원)

-2년 근속 시,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 지급(일시금)

채용요건

'23년 중에 정규직 채용

- 정규직근로계약서 상 3개월 이내
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

- 기 채용자는 기업의 참여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
채용된 자까지는 지원 대상으로 소급인정

'23년 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후 정규직 전환

- 기간제 근로자도, 3개월 이내
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 지원 대상으로 인정

기업

최근 1년간 평균 고용보험
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

단, 5인 미만 기업이라도

- ▲ 지식서비스산업 ▲ 문화콘텐츠산업
 - ▲ 신재생에너지산업 ▲ 청년 창업기업
 - ▲ 미래유망기업 ▲ 특별고용지원업종
-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

청년

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으로
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

단,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

- ▲ 고졸이하 학력 ▲ 국민취업지원제도참여자
- ▲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▲ 폐자영업자
- ▲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
총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지원 가능

[지원불가] 채용일 당시, 대학(원) 졸업예정자
또는 졸업 후 3개월 미만인 자 (2023 신설)

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

1. '22년도 vs '23년도 사업참여기준

- 지원대상 청년이 최초고용(계약직, 정규직 무관)된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에 참여
(예: '22.12.31.이전 최초고용된 경우 '22년도 사업에 참여, 이후라면 23년 사업에 참여)

2. 기업의 참여신청은 지원대상(청년)을 채용하기 이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

- 단, 이미 채용한 경우 기업의 참여신청일 이전 3개월 내 채용된 청년은 가능
(예: 기업참여신청일이 4.20일 경우 1.21 이후 채용자면 지원가능)

3. 인위적 감원 여부

- 청년의 채용일 3개월 이전부터 인위적 감원(고용조정 이직) 발생 시 지원이 불가능 합니다.
- 또한 기업의 사업참여 이후 전체 근로자에 대하여 **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이 중단** 됩니다

4. 동일한 참여청년에 대하여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그 차액만큼만 지원

5. 참여청년이 최소고용기간(6개월) 이내에 인위적으로 감원되거나 자진 퇴사한 경우

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(**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지원**)

